
새뜰마을사업 평가계획

- 2017년 추진실적 평가 -

2018. 1

국토교통부 · 지역발전위원회

목 차

1. 평가 개요	1
2. 평가 추진방안	3
3. 평가 결과의 활용	6
4. 향후 추진일정	8

붙임 :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 (지자체 작성)

1

평가 개요

1) 평가 목적

-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본 사업이 재생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 가이드 제시
- 국고지원 등 한정된 예산 집행의 실효성 향상
- 우수 대상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우수사례 발굴·정보공유
-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 및 향후 개선사항 발굴

2) 평가 대상

- 2015년 ~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역(도시지역)으로 선정된 전국 68개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점검

< 새뜰마을사업 평가 대상지 현황 >

시·도	사업개수	대상지역		
		'15년 선정	'16년 선정	'17년 선정
계	68개소	30개소	22개소	16개소
서울	2	종로	-	금천
부산	11	영도, 서구, 사상, 사하	금정, 동구, 남구	북구, 사하, 사상
대구	2	중구	-	남구
인천	4	동구, 부평	동구	동구
광주	4	남구, 서구	서구	남구
대전	1	대덕	-	-
울산	3	남구	동구, 북구	-
세종	1	조치원	-	-
경기	2	포천, 양주	-	-
강원	10	강릉, 태백, 동해, 영월	동해, 삼척, 태백	속초, 영월, 태백
충북	2	제천	영동	-
충남	4	논산	부여	보령, 홍성
전북	6	전주, 익산	전주, 익산, 군산	김제
전남	5	여수, 순천	여수, 목포, 장성	-
경북	4	김천	영주, 안동	영주
경남	7	양산, 창원, 진주	진주, 통영	김해, 밀양
제주	1	제주	-	-

3) 평가 주체 및 역할

□ 지역발전위원회

- 본 사업의 목표설정과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총괄 관리
- 우수한 대상지(지자체)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

□ 국토교통부

- 평가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를 주관하여 실시
- 사업 대상지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중간 점검
- 지자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잠정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, 최종 평가결과를 지역위에 보고

□ 지자체

- (기초지자체) 사업대상 지역에 대해서 평가 양식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,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
- (광역지자체)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, 우수지자체를 추천하여 국토부로 제출

□ LH

- 현장 모니터링, 잠정평가, 종합평가 등 지원
- 평가절차, 평가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Help Desk 역할

2

평가 추진방안

1) 평가체계

< 평가 추진절차 >

<주요 내용>	<절차 담당>	<일정>
모니터링 및 컨설팅	국토교통부·LH(중앙지원단)	'17.12월말
지자체 자체 평가	지자체→국토교통부	~ '18.2.14
국토교통부 잠정평가	국토교통부(평가위원회)	'18.2.20 ~ 2.21
잠정평가결과 송부	국토교통부→지자체	'18.2.28
지자체 보완 및 이의제기	지자체→국토교통부	'18.3.2 ~ 3.9
종합평가(우수사례 발굴)	국토교통부	'18.3.12 ~ 3.16
평가결과 보고	국토교통부→지역발전위원회	'18.3.20

□ 모니터링

- 국토부와 LH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대상지 전반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도록 함
-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함

□ 지자체의 자체 평가

- 사업의 추진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(기초지자체 작성→광역지자체 취합·제출)
- 자체평가는 사업추진 시 참여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, 주민의 참여 등 사업단계별 추진과정을 중점평가
- 자체평가 점수는 총점85점이 넘지 않도록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잘된 부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함

- 자체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·피드백(Fee-back)할 수 있도록 함
-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토록하고, 다음연도에 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평가함

□ 국토교통부 평가

- 국토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
 - 지자체의 자체평가 보고서와 국토부·LH의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잠정평가 실시
 - 잠정평가 후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고,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이의제기를 받음
 - 자료 보완내용 및 이의제기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실시
- 평가는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상대 및 절대평가를 실시함
 - 상대평가 시(5단계 평가의 경우)에는 상위점수에서 하위점수까지 비중이 10 : 20 : 40 : 20 : 10 의 비율이 되도록 점수를 부여
 - 평가의 유연성을 위하여 10% 범위 내에서 등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예 : 10→20, 10→0)
- (평가위원회 구성)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

□ 지역발전위원회 보고

- 국토교통부는 종합평가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
-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및 포상계획을 마련하고, 차기 사업 및 정책에 반영토록 함

2) 평가 항목 및 배점

□ 평가항목

- 평가는 사업기획, 사업집행, 사업성과, 사후관리 단계별 총 10개 항목으로 구분
 - (사업기획) ① 사업추진체계 및 협력성, ②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, ③ 사업계획의 타당성
 - (사업집행) ①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, ② 사업추진·집행의 진척도, ③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, ④ 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
 - (사업성과) ① 사업의 파급효과
 - (사후관리) ① 새롭게 창출된 공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절성, ② 지속적인 마을만들기 기대

□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

-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항목별로 점수 부여
 - 점수는 항목별로 5단 척도 평가를 기본으로 함
- (배점기준) 사업선정 연도에 따라 사업기획, 사업집행, 사업성과, 사후관리 단계별로 배점점수 다르게 설정
 - 1차 연도('17년 선정사업) : 사업기획(90%), 사업집행(10%)
 - 2차 연도('16년 선정사업) : 사업기획(50%), 사업집행(40%), 사업성과(10%)
 - 3차 연도('15년 선정사업) : 사업기획(20%), 사업집행(60%), 사업성과(10%), 사후관리(10%)

〈표 2〉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

단계	평가항목	평가방법	배 점		
			'15년 선정사업	'16년 선정사업	'17년 선정사업
	계		100점	100점	100점
사업기획	사업추진 조직체계 및 협력성	상대평가	5점	10점	35점
	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	상대평가	10점	20점	35점
	사업계획의 타당성	상대평가	5점	20점	20점
사업집행	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	상대평가	10점	5점	-
	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	상대평가	20점	20점	-
	사업추진 · 집행의 진척도	절대평가	15점	5점	10점
	사업추진 과정의 효율성	상대평가	15점	10점	-
사업성과	사업의 파급효과	상대평가	10점	10점	-
사후관리	새롭게 창출된 공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절성	상대평가	5점	-	-
	지속적인 마을만들기 기대	상대평가	5점	-	-

1) 계획 · 사업 보완 및 정책개선

- 평가의 목적은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, 우수한 점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데 있음
-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수립 및 집행, 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 및 보완
- 국토교통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매뉴얼, 평가 매뉴얼 등 개선에 활용

2) 국비 차등 지원

- 준비된 지자체부터 국비를 우선 지원하며, 준비도가 낮은 곳은 계획 수립 보완, 사업비 교부지연 등 조치
-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총 국비 지원액 조정

3) 인센티브 부여

- 우수 지자체의 주민·담당 공무원·전문가 등에 표창을 추진하고, 우수 사례는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

4

향후 추진 일정

- 평가계획 지자체 통보 : '18.1.18(잠정)
- 지자체 자체 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: ~ '18.2.14
- 우리부 잠정 평가 및 잠정평가결과 지자체 송부 : '18.2월 하순
- 지자체 보완 및 이의제기 : '18. 3월초
-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: '18. 3월 중순

붙임 : 지자체 자체평가 보고서 양식(1차연도, 2차연도, 3차연도) 각 1부. 끝.